

제261회(임시회) 제1차본회의
2007년 6월 11일 (月)

심 사 보 고 서

- 「세종특별자치시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」에
대한 의견제시의 건

충 청 북 도 의 회
행정자치위원회

「세종특별자치시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 사 보 고 서

2007. 6. .
행정자치위원회

I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7년 6월 4일
충청북도지사

나. 회 부 일 자 : 2007년 6월 5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제261회 충청북도의회(임시회)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

(2007.6.11)상정, 제안설명, 질의·토론, 심사의결(의견제시)

II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균형발전본부장 김경용)

1. 제안이유

- 행정자치부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명칭·지위·행정구역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 위해 「세종특별자치시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」을 입법 예고하고 지방자치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충청북도의회의 의견을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함에 따라
- 주민의 대의기관인 충청북도의회의 의견을 들어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기 위함.

2. 구하고자 하는 의회 의견

- (가칭) 세종특별자치시의 명칭·행정구역·법적 지위·법 시행일 등에 대한 의견

3. 행정중심복합도시 명칭·지위 및 관할구역

(「세종특별자치시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」 주요내용)

- 가.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설치되는 자치단체는 정부의 직할에 두고, 명칭은 “세종특별자치시”로 함(제2조)
- 나. 관할구역은 『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』에 따라 지정·고시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예정지역과 주변지역으로 함(제3조)

[표] 세종특별자치시 관할구역

	예정지역	주변지역	예정 + 주변
합 계	73.14km², 9,509명 5면 33리	223.77km², 34,775명 9면 74리	296.91km², 44,284명 9면 90리
연기군 361.38km ² , 82,747명	68.24(93.3%), 8,731 3면(남·금남·동) 28리	118.62(53.0%), 20,929 4면(서) 43리	186.86(62.9%), 29,660 4면 58리
공주시 940.50km ² , 128,330명	4.9(6.7%), 778 2면(장기·반포) 5리	71.73(32.1%), 5,931 3면(의당) 20리	76.63(25.8%), 6,709 3면 21리
청원군 814.16km ² , 136,538명	-	33.42(14.9%), 7,915 2면(부용·강내) 11리	33.42(11.3%), 7,915 2면 11리

- 다. 자치단체 설치하는 첫마을이 입주하는 시기(2010년)와 지방동시선거('10.6) 등을 고려하여 2010년 7월 1일로 함(부칙 제1조)

Ⅲ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Ⅳ. 토론요지 : “생략”

V. 심사결과 : 의견제시

의견서 : 별첨

VI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「세종특별자치시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

「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」 입법예고에 따른 충청북도의회의견서

2007년 6월 4일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“ 「세종특별자치시
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”에 대하여
충청북도의회 제261회(임시회) 제1차 본회의 의결(2007.6.11)을
거쳐 다음과 같이 제출함.

2007년 6월 11일

충청북도의회의장

1. 도시명칭 ⇒ 세종(世宗)

지난 2006년 전국민 공모를 통해 선정된 세종(世宗, Sejong)이라는 명칭은 조선시대 성군인 세종대왕을 의미하는 역사성이 내포되어 있고, 세상(世)의 으뜸(宗)이라고 해석되어 그 뜻이 심오할 뿐만 아니라 발음이 뚜렷하고 영문 표기가 쉬워 국제적으로도 쉽게 불리울 수 있어 행정중심 도시의 명칭으로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됨.

2. 법적 지위 ⇒ 특별자치시

행정수도에 버금가는 위상을 반영하고, 국가적 차원에서 국토균형발전을 실현하며, 기존 자치단체와 다른 행정체계의

특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「특별자치시」의 정부직할 광역자치단체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필수적이므로 이에 찬성함

3. 법 시행일 : 2010. 7. 1

현재까지 행정도시 건설 기본·개발계획 및 광역도시계획 등 각종 계획이 2010년 법 시행을 전제로 수립되었고, 광역자치단체로서의 출범준비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, 2010. 7. 1일자 시행에 찬성.

4. 관할구역 ⇒ 주민투표를 통해 희망지역에 한하여 편입

행정도시 주변지역의 경우 도시지형이나 형태보다는 당해지역 주민들의 의사가 중요함으로 충북도내 청원군 부용면 8개리(27.42km²)와 강내면 3개리(6.0km²)는 청원군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희망지역에 한해 편입. 끝.